

다문화가족학생지원 규정

- 제 정 : 2012. 6. 29.
- 개 정 : 2019. 6. 18.
- 개 정 : 2021. 12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수·학습 및 진로·심리상담 등을 지원하여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“다문화가족 학생”이란 「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차별금지) 다문화가족 학생은 대학생활 및 복지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.

제4조(조직) 본교 진로·심리상담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며, 진로·심리상담센터는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업무) 진로·심리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.

1.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습, 생활, 상담, 시설 등의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
2. 다문화가족 학생의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3. 다문화가족 학생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다문화가족 학생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6-1-2 다문화가족학생지원 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